

항상 중국공상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중국공상은행에 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'금리인하요구제도'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금리인하요구권이란

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 3 조(이자 등과 지연배상금) 제 9 항과
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제 20 조(여신거래조건의 변경) 3 항 및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19 조의 18(금리인하 요구)에 의거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
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
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
있는 제도입니다.

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
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■ 대상

주택담보대출

※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에 한합니다.

■ 적용제외대상

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■ 금리인하 신청사유

아래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: 취업, 승진, 재산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

■ 금리인하 신청방법

영업점 대출상담 창구로 방문후 신청

※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■ 신청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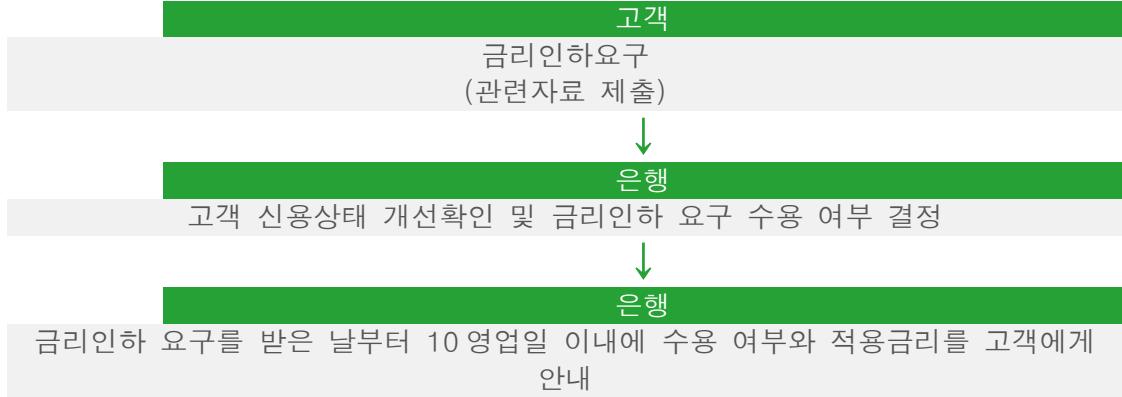
금리인하 요구사유 발생시 신청가능

■ 유의사항

-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
-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,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

■ 금리인하요구 처리절차

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


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